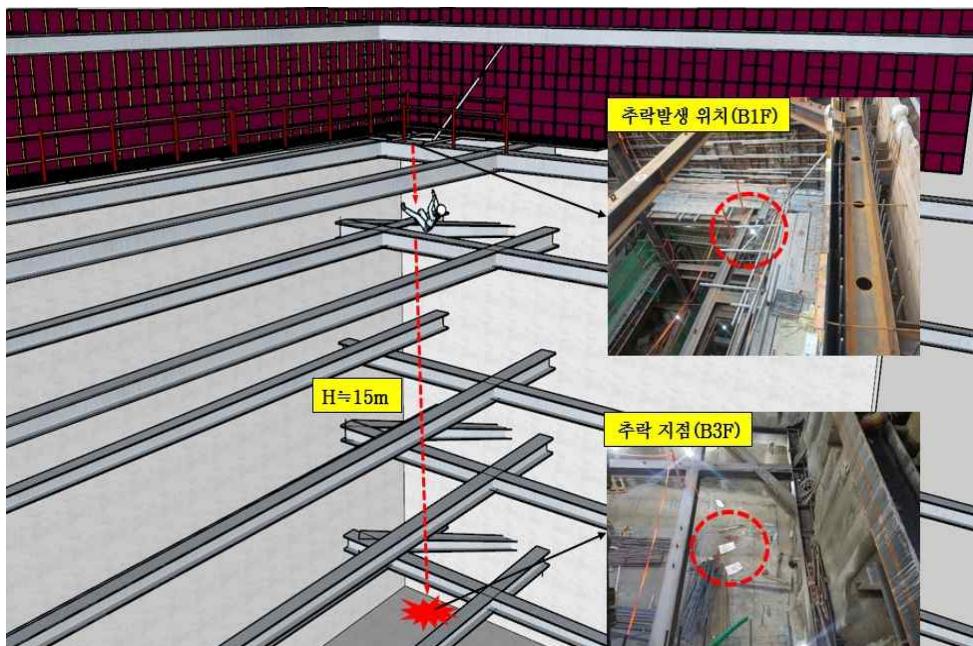


합벽 거푸집 설치 작업 중 베팀보 상부에서 추락, 사망

공사명	○○ ○○○ 복합몰 신축사업	발생일시	2020. 01. 10(금) 13:50경
재해형태	추락	재해정도	사망 1명
소재지	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182	공사규모	본관 : 지하 7F, 지상 10F 별관 : 지하 3F, 지상 13F
재해개요	2020.01.10(금) 13:50경 ○○시 ○○구 소재 ○○건설(주) ○○ ○○○ 복합몰 신축 사업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협력업체 재해자(74세, 형틀목공)가 별관동 지하 1층 합벽 거푸집 전도방지를 위해 경사 지지대(동바리)를 베팀보에 설치 후, 베팀보 위에서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잊고 지하 3층 바닥($H \approx 15m$)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		

재해상황도



안전대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리감독자 유해위험방지 업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리감독자는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·조립 또는 해체 작업시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며,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여야 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락 방지 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작업발판, 추락방지망 설치, 안전대 착용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여야 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, 작업시작 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함